



“자원순환을 넘어 에너지기업으로”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KOREA RESOURCE-RECYCLING ENERGY MUTUAL-AID ASSOCIATION

수신 전 조합원사 대표이사
[대표이사 메일송부 병행문서]

참조 법·제도 담당

제목 「통합허가 중간점검 및 허가용량 재산정 지침(안) 간담회」 자료
송부 및 의견제출 요청(긴급)



1. 한공조2019-155호[통합허가 추진 중간점검 및 소각시설 허가용량 재산정 지침 제정(안) 검토 간담회 개최, ('19.4.26)]와 관련입니다.
2. '19.5.3(금) 14:00 조합 회의실에서 개최된 「통합허가 중간점검 및 허가용량 재산정 지침(안) 간담회」 자료를 불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면밀히 검토하시어 귀 사의 입장에서 의견을 작성하여 '19.5.15(수)까지 조합(FAX : 02-718-7171)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2. 「통합허가 중간점검 및 허가용량 재산정 지침(안) 간담회」 자료 1부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이사장



담당 김정훈 팀장 한인성 사무국장 장기석 부이사장 진원기 이사장 박무웅
협조자
시행 한공조 2019 - 185호 (2019. 5. 9) 접수
우 04508 서울시 중구 종림로 50-1(만리동1가, SKY1004빌딩) 13층 / www.krema.kr
전화 02-718-7900 전송 02-718-7171 / krema@krema.kr / 비공개

통합허가 중간점검 및 허가용량 재산정 지침(안) 건의의견

구 분	건의의견	사 유
1. 통합허가 관련		
2. 허가용량 재산정 지침(안) 관련		

※ 필요시 별지에 작성하셔도 됩니다.(관련자료 등 망라 제출 가능)

2019. 5. .

업 체 명 :

담당자 :

연 락 처 :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귀중

일 시 : 2019.5.3(금) 14:00

장 소 : 스카이1004빌딩 B1 대회의실

통합허가 중간점검 및 허가용량 재산정 지침(안) 간담회

2019. 5. 3.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KOREA RESOURCE-RECYCLING ENERGY MUTUAL-AID ASSOCIATION

공정거래법 준수를 위한 행동준칙

-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업자단체활동지침」에 의거 아래에 명시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 가.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 나.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 다.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 라.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 마.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바. 상품의 생산 또는 거래시에 그 상품의 종류 또는 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 사.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
- 아. 기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 자.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
- 차.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카.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 타. 사업자에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 파. 기타 행정지도 등에 관한 행위

※공정위 고시 제2013-9호 「사업자단체활동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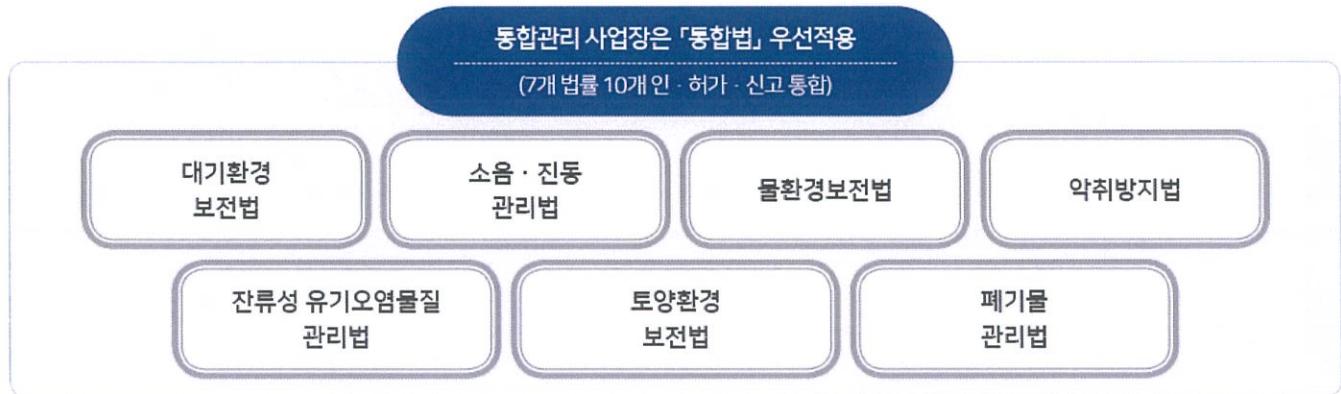
- ② 국내 경쟁관련법 및 규정상 불공정 행위라고 의심될 만한 발언이나 행위를 하거나, 이를 유도할 수 있는 어떠한 사안도 논의해서는 안 된다.
- ③ 조합[협회] 및 조합원사[회원사]는 이사회 뿐만 아니라 권역별회의 및 비공식 모임에서도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 통합허가 중간점검 협의

가 통합허가 개요

1) 통합허가 대상 법률

- 대기, 수질, 폐기물 등 7개 법률 10개 인·허가·신고를 사업장 단위에서 일원화하여 오염물질 배출 관리 및 최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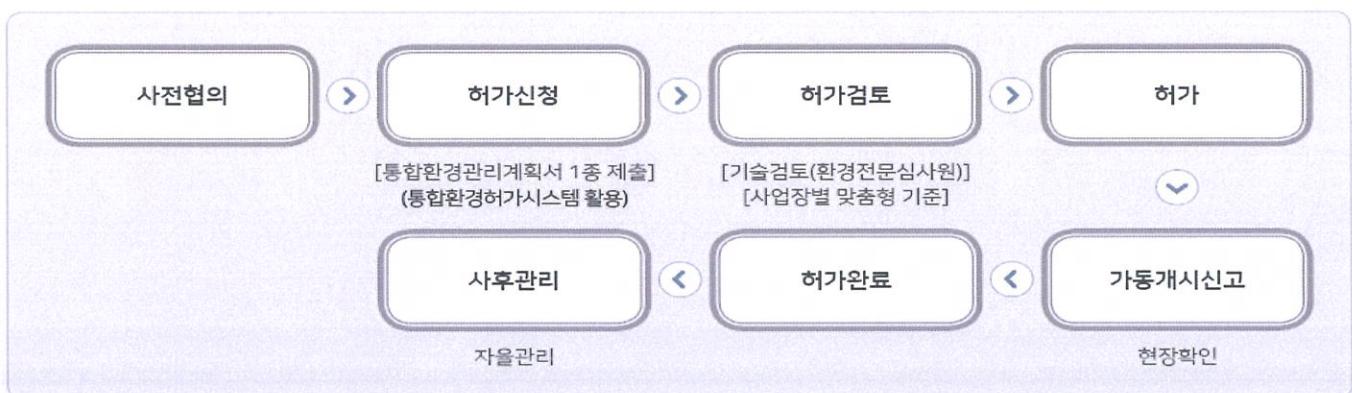


- 통합관리 대상 사업장에는 통합법을 우선 적용하고, 대상 외 사업장은 기존과 같이 개별법의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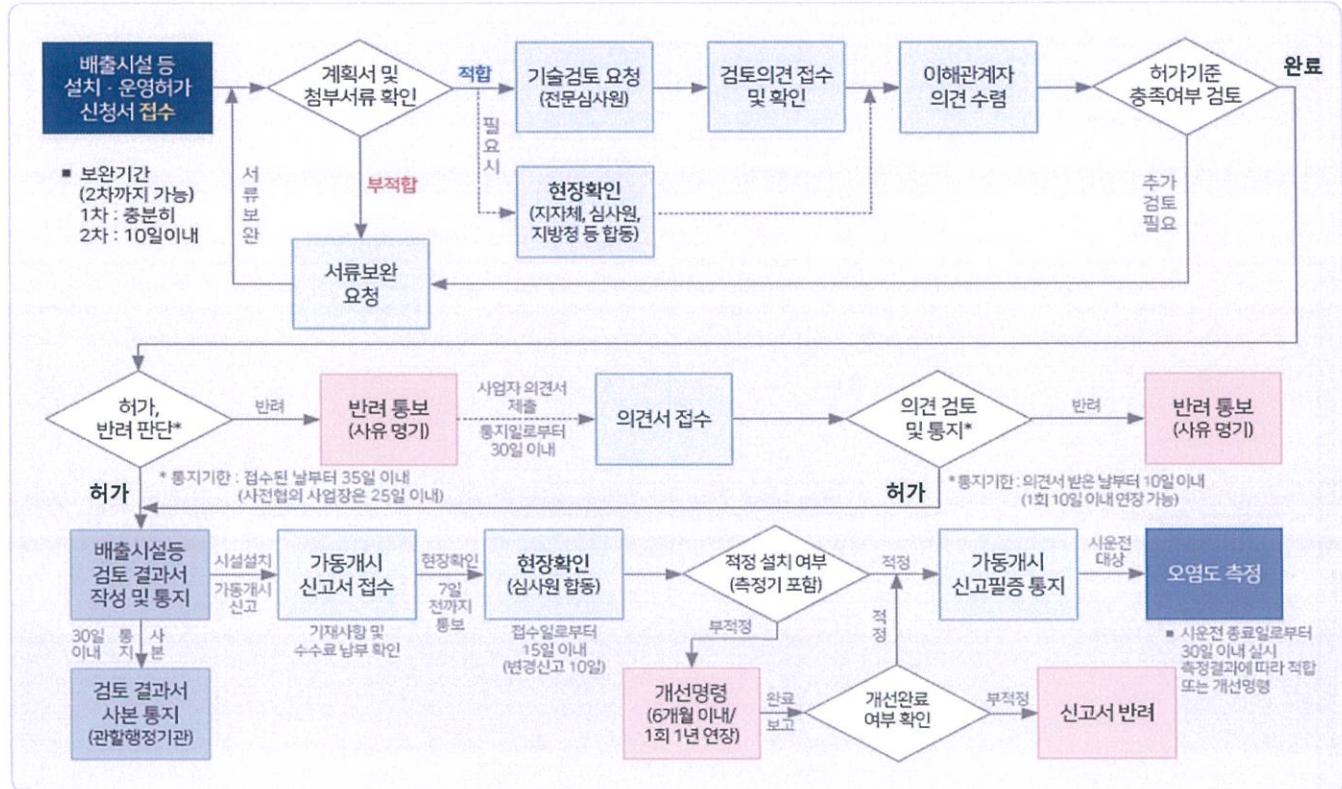
2) 통합허가 대상시설

- 기존 소각시설 / '20.12.31까지 통합허가 전환
- 신규 소각시설 / '17.1.1부터 통합허가 신청
- 매립장 보유 소각시설 / '23.12.31까지 통합허가 전환

3) 통합허가 절차



- 허가신청서와 통합환경관리계획서, 그 외 첨부서류를 통합환경허가시스템으로 제출하여 통합허가 신청



나 그간의 경과

1) 소각업계 통합허가 취득 대행업체 7개사 지정('18.7)

- (주)한국환경안전연구원 / (주)에코마인드 / (주)에코앤파트너스 / (주)제일엔지니어링 / (주)하이텍환경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주)한국환경진단연구소

2) 조합원사 48개사 통합허가 추진 경과

- 17개사 대행업체 선정 진행 中
- 1개사 자체 통합허가 진행 中
- 30개사 대행업체 선정 中

3) 매립장 보유 소각업체 통합허가대상 추가 입법예고('19.4.18)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4) (주)세창이엔텍 소각시설 1호 허가 취득('19.4.22)

- 소각 신규 및 재활용 시설 통합환경허가 취득

5) 허가 추진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착안사항

가) 배출영향분석 시 대기배출허용기준 지역별 일괄 적용 문제

- 2020년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 대비 60~70% 유지 방안 마련
- NOx 배출허용기준 준수를 위한 SCR 설치 적극 권장 및 부지부족 문제
- 통합허가 취득 및 유지관리 고비용 문제와 시간부족 문제

나) 매립장 보유 소각시설 통합허가 대상 추가지정 문제

(1) 환경부가 밝힌 지정 제외 사유

- 운영 중 악취, 비산먼지 등 각종 민원이 가장 빈번한 시설이며, 최적 가용기법 작성·적용이 어려워 매립시설 보유업체 통합허가 대상 포함 시 환경부 업무 부담이 커 제외

(2) 최초 시행 시 상기 사유로 제외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용역 등 절차 없이 통합허가 대상 포함

다) 폐기물 보관시설 관리 강화 요구의 문제

- 보관일수 입증, 악취 및 침출수 처리방법 제시, 폐기물 반입장 입구 에어 커튼 및 이중문 설치 등

라) 반입폐기물 보관설비 내 음압(-) 유지 및 연소용 공기로 공급 여부 검토

마) 소각용량 대비 화상면적, 화상부하율의 적정성 여부 검토

바) 소각공정 발생 Clinker 저감 대책 마련

사) 소각로 최종 배출가스량, 가스농도, 출구온도 적정 산출내역서 검토

아) 보일러 수 공급방안 및 최종 배출되는 블로우다운수(공급량의 5% 전후) 최종처리방안 마련

- 증금속 포함여부 및 농도 등 검토

자) 세륜·세차설비 발생 폐수 처리방안 마련

- 차) 폐기물 소각시설 발생가능 대기오염물질 49종 관리방안 마련
- 자가측정 및 주변 모니터링 계획 자체 강화(안) 마련
- 카) 사업장 반입 폐기물의 성상 입증방안 마련
- 반입폐기물에 대한 물리적 조성 값과 화학적 조성 값 확인
- 타) 소각공정에서 발생되는 소각열(스팀) 활용계획 제출 요청
- 소각열(스팀) 활용방안과 판매 시 판매처와 약정된 관련 서류 등
- 파) 소각공정에서 최종 배출처리되는 폐수, Ash, 폐기물 등 처리방안 마련

〈 소각시설 통합허가 취득 과정 설명 〉

- 최상보 부사장 / 한국환경안전연구원 -

가. 개요

- 대상 / (주)세창이엔텍 신규 소각시설 및 재활용시설
- 주요설비 / 소각시설 96톤/일, 폐기물 보관시설 2,080톤, 슬러지 건조설비 300톤/일, 슬러지 보관시설 3,195톤

나. 취득과정

- '18.03.22 / 통합환경허가 컨설팅 계약 체결
 - '18.08.01 / 통합환경허가 서류 작성 및 사전협의 접수
 - 1~3차 서류 수정·보완 및 기술검토 완료
 - '19.03.20 / 통합환경허가 본 협의 접수
 - 1~2차 서류 수정·보완 및 기술검토 완료
 - '19.04.22 / 통합환경허가 취득
-

다 향후계획

- ① 금번 회의결과 조합원사 의견 수렴 후 이사회 논의 거쳐 업계입장 환경부 제출
- ② 매립장 보유 소각업체 추가 지정 철회요청 건의서 제출

〈업체별 통합허가 추진 현황〉

('19.5.2 현재)

NO	업체명	취득 계획		대행업체	예상완료 시점
		자체 취득	대행업체 취득('19년)		
1	대일개발(주)	-	대행업체 선정 중	-	-
2	부경산업(주)	-	대행업체 선정 중	-	-
3	비노텍(주)	-	5월 중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이원이엔지	'19년 말
4	성림유화(주)	-	7월 중 1차 사전협의(안) 제출 예정	조선내화이엔지	-
5	K G E T S(주)	-	5월 중 사업협의 접수 준비	하이텍환경	'19년 초
6	한국환경개발(주)	-	관련 서류 5월 중 대행업체 제출	이원이엔지	-
7	(주) 뉴그린	-	5월 초 사전 협의 신청 준비	이원이엔지	'20년 중
8	신대한정유산업(주)	-	올해 안 사전검토 준비	이원이엔지	'20년 초
9	(주) 청송산업개발	-	대행업체 선정 중	-	-
10	경기환경에너지(주)	-	대행업체 선정 중	-	-
11	(주) 신승에너지	-	5월 초 2차 협의 준비 중	환경보건기술연구원	'19년 5월
12	(주) 그린스코	-	대행업체 선정 중	-	-
13	(주) 이알지서비스	-	대행업체 선정 중	-	-
14	경인환경에너지(주)	-	대행업체 선정 중	-	-
15	(주) 케이비텍	-	대행업체 선정 중	-	-
16	(주) 에이티에너지	-	5월 실행협의체 1:1컨설팅(환경부) 준비	연합환경안전컨설팅	'19년 7월
17	(주) 동양환경	-	대행업체 선정 중	-	-
18	우진환경개발(주)	-	관련 서류 5월 중 대행업체 제출	이산	'20년 12월
19	(주) 클렌코	-	대행업체 선정 중	-	-
20	(주) 다나에너지솔루션	-	관련 서류 5월 중 대행업체 제출	이원이엔지	-
21	(주) 영흥산업환경	-	대행업체 선정 중	-	'20년 6월
22	충청환경에너지(주)	-	대행업체 선정 중	-	-
23	(주) 이에스지세종	-	관련 서류 4월 대행업체 제출	NEC파워	'20년 3월
24	디에스컨설팅(주)	-	소각시설 정상가동 일정에 따라 결정	-	-
25	(주) 거림	-	대행업체 선정 중	-	-
26	(주) 에너지네트웍	-	대행업체 선정 중	-	-
27	(주) 범우	-	매립장 보유 시설로 미진행 중	-	-
28	N C 울산(주)	-	대행업체 선정 중	-	-
29	(주) 유니큰온산공장	-	변경허가 완료 후 6월 중 통합허가 진행	유성중앙연구소	'19년 말
30	(주) 코엔텍	-	대행업체 선정 중	-	'22년 말
31	(주) 이엠케이승경	-	관련 서류 5월 대행업체 제출	이원이엔지	'19년 말
32	(주) 엔아이티	-	대행업체 선정 중	-	'20년 초
33	주원전주(주)	-	대행업체 선정 중	-	-
34	(주) 창원에너지	-	대행업체 선정 중	-	-
35	(주) 국인산업	-	대행업체 선정 중	-	-
36	동양에코(주)	-	대행업체 선정 중	-	-
37	(주) 제일에너지	-	대행업체 선정 중	-	-
38	(주) 네비엔-영천사업소	-	대행업체 선정 중	-	-
39	(주) 명성환경	5월 중 2차 협의(안) 제출	-	-	-
40	정세환경기술(주)	-	대행업체 선정 중	-	-
41	초당환경(유)	-	관련 서류 5월 중 대행업체 제출	코엔텍알앤씨	-
42	(주) 동양환경-무안	-	대행업체 선정 중	-	-
43	(유) 남해환경	-	대행업체 선정 중	-	-
44	(주) 와이엔텍	-	매립장 보유 시설로 미진행 중	-	-
45	케이씨환경서비스(주)	-	관련 서류 5월 중 대행업체 제출	나루이엔씨	'20년 12월
46	케이씨환경서비스(주) 여수	-	매립장 보유 시설로 미진행 중	-	-
47	케이씨환경서비스(주) 창원	-	관련 서류 5월 중 대행업체 제출	한국환경안전연구원	-
48	케이씨환경서비스(주) 전주	-	관련 서류 5월 중 대행업체 제출	나루이엔씨	'20년 6월

2 허가용량 재산정 지침(안) 협의

가 제정 목적

- 상시 악성폐기물 반입으로 설계발열량 대비 낮은 발열량으로 소각시설 정상 가동이 불가능하여 이를 개선코자 환경부 주관 발열량 재산정 지침(안) 제정 추진

나 그간의 경과

- '18.5.17 ~ 6.19 / 5개 업체 시료채취 발열량 및 폐토사·불연물 비율분석
- '19.3.11 ~ 3.13 / 15개 업체 시료채취 발열량 분석
- '19.4.23 ~ 4.25 / 5개 업체 추가 시료분석을 위한 사전 협의
- '19.5.1 / 소각시설 허가용량 재산정 지침 자문회의 개최

〈 지침 제정(안) 주요내용 〉

- (기본방향) 소각업체는 허가용량 산정 시 적용한 예측발열량 대비 “반입폐기물 발열량” 적용을 통해 기존시설 신·증설 없이 허가용량의 1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 산정
- (대상시설) 폐기물중간(소각)처분업 허가를 득하고 **운영 중인 폐기물** (사업장·의료) 소각시설
- (적용시기) 동 지침은 시행일로부터 2019.12.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 동 기간 중 “폐기물중간처분업 변경허가 신청”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020.5.30.까지 동 지침을 적용함
- (허가용량 재 산정 방법) 소각업체 반입폐기물 “대표발열량” 분석,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등 인·허가를 통해 허가용량 재 산정

- (대표발열량 산정)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등에서 총 3회이상 시료 채취, 저위발열량(평균값) 산정
 - 국립환경과학원, 발열량 분석전문기관 선정, 실무교육 등을 통해 발열량분석의 신뢰성 확보 예정(‘19.5월경)
- ⇒ 폐기물전문분석기관 등은 저위발열량 산정결과, 분석 장비 등을 “폐기물발열량 분석결과서”를 소각업체에 발급
- (허가용량 변경허가) 소각업체는 “설계기준 소각시설 열부하량”과 “반입폐기물 대표발열량”에 근거하여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신청서”를 인·허가 기관에 신청
 - ⇒ 인·허가기관은 소각시설 열부하량 산정결과 등을 검토하여 “허가용량을 재 산정”하여 인·허가
- 적정 처분용량(톤/hr) 산정식
 - = 설계기준 소각시설 열부하량(Gcal/hr) / 반입폐기물 대표발열량(kcal/kg) × 10³

다 도출된 문제점 해결방안

- 1) 지침에 명시된 기간 내 변경허가 이행 불가능
 - 5개 분석기관이 6개월간 130기 소각시설 390회 분석 불가능
 - 업체별 신청에 따라 변경허가 승인 비율 추진 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변경협의,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주변환경영향조사, 주민협의, 공청회 등 이행에 10개월 기간 부여로는 지침 제정 의미 상실
 - ▶ ‘19.12.31까지 행정행위 의사 제출, ‘20.12.31까지 이행, 미이행 사유 인정 시 1년 범위내 1회 연장
- 2) 지침 활용가능 업체 극히 제한적
 - 환경영향평가 대상 28개사, 시화·반월 허가제한 지침 대상 7개사 등 35개사 지침 활용 불가능

- 특히 90~99톤/일 범주 14개 업체 운신조차 불가능
- 설계발열량 낮은 업체 분석 저위발열량과의 편차 근소 변경허가 의미상실
- 화상면적 여유율 없는 업체 신청자체 불가능
- 지자체 조례와 지침에 묶여 있는 업체 허가신청 불허
 - 시화·반월 허가제한 지침 적용 7개 업체
 - 증설 불허 원칙 전주시 조례 적용 3개 업체 등
- ▶ 시설과 배출가스기준 일체 변경 없이, 설계발열량에 도달하도록 소각로 증량 조치만을 해주는 한시적 특례 지침인 만큼 발열량 변화 분석값에 따라 인정된 필요 허가량을 모두 변경 승인해주는 조치가 적절

지침 활용 대상을 폭넓게 하고 방치폐기물 사태 해결 일환 지자체의 전향적 검토, 환경부 교육·홍보

라 향후계획

1) 환경부

- 시범사업 추진
- 6월 중 제정(안) 확정
- 7월 1일 시행 계획

2) 조합

- 지침 내용 업계 수용 및 이행가능 여부 검토[5.3(실무진) / 5.17(이사회)]
의견제출
- 조합 요구사항 반영여부 지속 확인 및 의견 개진

3 간담회 결과

가 통합허가 중간점검 협의

1) 배출영향분석 후 허가배출기준 산정 시 강화된 기준 적용 요구 문제

- 사업장 부지경계로부터 20km이내의 지역 대기질 정보 등으로 배출영향 분석 후 허가배출기준을 산정하면 현행법보다 최대 20배 강화된 배출 허용기준 준수 의무 부여
- 통합허가 소각시설 1호 사업장인 (주)세창이엔텍의 경우 NOx 29ppm(현행 70ppm), 다이옥신 0.05ng-TEQ/Nm³(현행 1) 등 강화된 기준 적용
- ▶ 건의 : 허가 절차 간소화라는 통합허가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배출허용기준 강화가 아닌 업체 상황을 고려하여 준수 가능한 기준 적용 요청

2) 폐기물 보관창고 등에 대한 강화된 악취방지대책 요구 문제

- 소각시설 가동 중지 등 폐기물 보관창고 발생 악취의 소각시설 투입이 불가능한 경우 악취제거 방법 요구
- ▶ 건의 : 폐기물 보관창고에 악취제거를 위한 활성탄 설비 설치 등 최소한의 방법으로 허가 승인 요청

3) 업체별 허가 진행과정 중 도출된 요구사항 문제 의견 제출키로 함

나 허가용량 재산정 지침(안) 협의

환경부 변경허가 원칙

'19.12.31까지 허가용량의 150% 이내 변경허가 절차 행정행위
의사 제출 후 '20.5.30까지 허가 완료

1) 비율별 변경허가 가능여부 진단(모든업체 변경기준 산출 값으로 실제 가능량은 더 적을 것임)

가) 120% 변경허가 신청 적용 시

변경허가 절차이행 구분	업체수 (개사)	허가용량		변경가능 여부
		(톤/일)	(톤/시)	
환경영향평가 대상	16(2) ¹⁾	1,785.9(232.4)	74.424(9.684)	주민의견 수렴 의무 변경허가 원천 불가능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	-	-	-	
시화·반월 허가제한 지침 대상	5	1,209.5	50.399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	18	5,061.3	210.91	주민의견 미수렴 변경허가 일부 가능
환경영향평가 미대상	28	2,021.7	84.264	
합 계	67(7) ²⁾	10,078.4(1,441.9)	419.997(60.083)	

변경허가 가능 업체 46개사 5,903.2톤/일 → 7,083톤/일 (**1,179.8톤/일 증가**)

나) 130% 변경허가 신청 적용 시

변경허가 절차이행 구분	업체수 (개사)	허가용량		변경가능 여부
		(톤/일)	(톤/시)	
환경영향평가 대상	19(2) ¹⁾	2,243.4(251.7)	93.496(10.491)	주민의견 수렴 의무 변경허가 원천 불가능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	23(5) ¹⁾	6,793.4(1,310.2)	283.085(54.599)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	-	-	-	
환경영향평가 미대상	25	1,881.8	78.416	주민의견 미수렴 변경허가 일부 가능
합 계	67(7) ²⁾	10,918.6(1,561.9)	454.997(65.09)	

변경허가 가능 업체 25개사 1,447.6톤/일 → 1,881.8톤/일 (**434.2톤/일 증가**)

다) 150% 변경허가 신청 적용 시

변경허가 절차이행 구분	업체수 (개사)	허가용량		변경가능 여부
		(톤/일)	(톤/시)	
환경영향평가 대상	28(2) ¹⁾	3,565.4(290.52)	148.56(12.105)	주민의견 수렴 의무 변경허가 원천 불가능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	23(5) ¹⁾	7,839(1,511.9)	326.637(62.999)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	-	-	-	
환경영향평가 미대상	16	1,195.2	49.8	주민의견 미수렴 변경허가 일부 가능
합 계	67(7) ²⁾	11,404.4(1,802.42)	475.197(75.104)	

변경허가 가능 업체 16개사 796.8톤/일 → 1,195.2톤/일 (**398.4톤/일 증가**)

1) 시화·반월 허가제한 지침 중복규제로 더욱 변경허가 불가능한 업체

2) 시화·반월 허가제한 지침 대상 중복 7개사

2) 지침(안)에서 도출된 문제

- 가) 환경영향평가·재협의 대상 업체 그림의 떡
- 나) 발열량 낮게 설계된 업체 열량 변화 입증방법 전무
- 다) 화상면적 여유율 없는 업체는 손도 못 대는 지침
- 라) 허가제한 지침으로 시화·반월업체 동 지침 활용방법 전무
- 마) 법망에서 자유로운 소규모 시설만 변경 가능으로 방치폐기물 처리 목적 및 처리량 확대 제도개선 의미 상실
- 바) 행정절차 소요기간 무시한 5개월기한 변경허가 부여
- 사) 향후 발생량과 처리량 불균형 발생 시 업계 부메랑 우려
- 아) 기타(※예견되는 문제점을 귀사 입장에서 모두 기록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결 방안

- 일체의 신·증설이 없는데 환경영향평가·재협의 적용은 무리
(환경영향평가는 시설의 변경이 있을 때 적용 원칙)
- 대기배출량을 비롯한 오염물질의 변화 없는 열량보완행위일 뿐임

- ◇ 한시적 특례 조치인 만큼 환경영향평가 관련 인·허가 절차 제외 및 자체 조례와 지침 불구 우선 적용 원칙
- ◇ '19.12.31기준 1년의 이행기간과 타당한 사유인정 시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 적용 원칙